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72
----------	----

제출연월일 : 2026년 8월 20일

제출자 : 경기도지사

1. 제안이유

-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2. 주요내용

- 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 23,376백만원
 - 경기관광공사 운영 및 경기도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②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 47,219백만원
 - 경기문화재단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③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 11,731백만원
 -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도자·공예문화산업 진흥 사업 추진
- ④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 17,628백만원
 -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 44,793백만원
 - 경기아트센터 및 경기도예술단 운영, 문화예술공연 사업 추진

3. 세부내용 : 불입

2027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

1.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 조원용)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2. 5. 21.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5층
 - 조 직 : 1본부 3실 14팀
- 주요사업
 -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업계 육성 등
 -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운영,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등
 - 국제회의(컨벤션)산업 육성 사업,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관광 교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

2. 출연근거

-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 2
- '27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관광공사 운영」
- 예 산 액 : 23,376백만원
 - 인력운영비 : 9,328백만원
 - 경상경비 : 1,448백만원
 - 사 업 비 : 12,600백만원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주요내용

- 해외 현지 거점 활용 및 타겟 시장별 맞춤형 인바운드 관광 마케팅 추진
- 한류콘텐츠(OST)를 활용한 도 대표 뮤직 페스티벌 축제 개최
- 촌캉스·반려동물관광 등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도·시군 협력사업 강화를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발굴
- 임진각 평화누리의 안정적 관리·운영 및 안중근 평화센터 활성화
- 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분석 플랫폼 운영 및 방문객 실태조사

4. 필요성

- 도 대표 축제 육성 및 최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경기도 테마 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기관광 브랜드 확립
- 급증하는 방한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마케팅 확대 필요
-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 등을 통한 평화·역사·생태 관광지로서 DMZ 활성화
- 문화관광 데이터분석 플랫폼 운영 및 방문객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 관광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기반 마련

5. 기대효과

- 도 대표축제 개최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경기관광 마케팅·홍보 강화로 국내외 관광객 경기도 유치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 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광정책에 대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기관광 브랜드 확산,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 2에 따라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

주관부서	관광산업과장	고영미(☎8008-3330)	관광정책팀장	탁민영(☎8008-4722)
------	--------	-----------------	--------	-----------------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A)	2026년 예산(B)	증감액 (A-B)
	총 계	23,376,014	32,256,400	△8,880,386
운영비	인건비 및 경상경비(소계)	10,776,014	10,356,400	419,614
	인건비(기본연봉, 제수당 등)	9,328,010	7,403,230	1,924,780
	관리비(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448,004	2,953,170	△1,505,166
사업비	사업비 소계	12,600,000	21,900,000	△9,300,000
	선제적 국내외 관광객 유치	6,330,000	10,920,000	△4,590,000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브랜드 확립	2,490,000	4,650,000	△2,160,000
	DMZ 평화 생태관광 글로벌 허브 도약	2,650,000	5,100,000	△2,450,000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	1,130,000	1,230,000	△100,000

경 기 관 광 공 사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5층 경기관광공사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대표전화	일반 : 031-259-4700						설립주체	경기도					
								FAX : 031-259-4737												
								URL : www.gto.or.kr												
연혁	○ 설립연도 : 2002.05.21.											기관형태		공기업						
인원현황 (26. 7. 1. 기준)	구분	계	임원	직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계약	별정	기타(시설)	소계	청경	무기계약	기타(공무)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123	1	86	80	-	5	-	1	36	-	9	27	41	41	-	-
				현원	115	1	81	76	-	4	-	1	33	-	9	24				
임원 (26. 7. 1.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인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법령상 임기					
	사장 (직무대행)		조○○		前 효성그룹 실장(전무)										‘22.12.2.~ 후임자 임명시					
	이사 (당연직)		정○○		現 경기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박○○		現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배○○		現 경기도관광협회 회장										재임기간					
			홍○○		現 한국여행학회 회장										’25.11.04.~’26.11.03.					
			전○○		現 (주)비손리버 대표이사										’25.11.04.~’26.11.03.					
			오○○		現 데이터뉴스 대표										’26.1.30.~’27.1.29.					
			임○○		(現)(주)클라이온 고문										’24.9.13.~’27.9.12.					
			염○○		(現)특허법인 씨엔에스 (대표) 변리사										’24.9.13.~’27.9.12.					
(당연직) 비상임감사		고○○		現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 인프라 조성 및 관리·운영, 관광시설 개발사업 · (관광진흥사업)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업무, 관광관련 각종 연구·조사, 한류문화조성 지원사업, 관광관련 국내외 협력지원 등 · MICE 육성 사업,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관광교류 협력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																		
자본금(백만원)		설립		20,000						납입		140,905								
(25.12.31. 기준)		수권		150,000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5.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141,432	11,550	129,882	5,831	5,677	154	135,601	140,905	△5,304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의2(예산지원) 도지사는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27년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 유정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7. 7. 3.
 - 설립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민법」 제32조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 조직 : 3실 3본부 8소속기관
- 주요사업
 -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및 지방 향토사·전통문화 연구개발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관련 정책개발 및 교육 등 활성화 지원
 - 국제문화예술교류,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도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2.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7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26. 8월

3. 사업개요

- 사업명 : 경기문화재단 운영
- 예산액 : 47,219백만원
 - 인력운영비 : 22,390백만원
 - 경상경비 : 11,299백만원
 - 사업비 : 13,530백만원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주요내용

- 역사 · 문화유산의 발굴 · 보존 · 현대화
- 문화예술의 창작·교육·보급지원과 환경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방향토사 연구
- 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4. 필요성

- 문화예술 진흥의 중추 기관 역할 수행 및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
 - 도내 예술인·단체 창작 지원 및 활동 기반 조성
 - 계층·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 도가 위탁한 道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
 - 유물·작품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 공익적 사업 수행

5. 기대효과

- 예술인·단체 창작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
- 상설·기획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

6. 검토의견(주관부서)

- 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역 예술인 지원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문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장	최흥락(☎8008-2270)	문화정책팀장	정성규(☎8008-4672)
------	--------	-----------------	--------	-----------------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A)	2026년 예산(B)	증감액 (A-B)
총 계		47,219,850	23,882,000	23,337,850
운영비	소 계	33,689,850	17,719,228	15,970,623
	인건비	22,389,941	10,528,141	11,861,800
	경상경비	11,299,909	7,191,087	4,108,823
	시설비 및 부대비	-	-	-
사업비	소 계	13,530,000	6,162,773	7,367,227
	지속가능 경영혁신	-	150,000	△150,000
	소통 기반 디지털 문화행정 고도화	696,000	1,105,000	△409,000
	경기도형 예술활동 성장지원	3,540,000	546,773	2,993,227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1,440,000	-	1,440,000
	문화예술 기반 복합문화거점 운영	2,035,000	1,020,000	1,015,000
	도민 참여형 뮤지엄 운영 활성화	5,619,000	3,241,000	2,378,000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 활성화	200,000	100,000	100,000

관계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경 기 문 화 재 단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설립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민법 제32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전화	일반 : 031-231-7200					설립주체	경기도				
								FAX : 031-236-3708										
								URL : www.ggcf.kr										
연혁	○ 설립연도 : 1997년 ○ 경기문화재단-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2008. 3. 1.)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2008. 10. 8.) ·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출범(2009. 3. 1.) ○ 실험박물관 개관(2009. 10. 23.) · 경기창작센터 개관(2009. 10. 29.) ○ 전국민속박물관 개관(2011. 4. 25.)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개관(2011. 9. 26.) ○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2014. 6. 22.)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이관운영(2020. 1. 1.)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6. 7. 1. 기준)	구분	계	임원	직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학예	전문계약	별정	기능	기타(시설)	소계	청경	무기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385	1	212	212		-	-	-	172	-	172	-	90	90
현원	364	1	211	211		-	-	-	153	-	153	-						
임원 (’26. 7. 1.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인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법령상 임기			
	이사장		허 ○ ○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23.11.24~27.11.23			
	대표이사		유 ○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25.02.24~27.02.23			
	비상임이사 (당연직)		박 ○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5.02.03~재임시			
			천 ○ ○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장										23.02.09~재임시			
			김 ○ ○		경기민예총 이사장										24.02.21~재임시			
			김 ○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24.03.14~재임시			
			김 ○ ○		경기아트센터 사장										25.03.14~재임시			
	비상임이사		김 ○ ○		인천시립교향악단 악장										23.04.24~27.04.23			
			김 ○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24.09.02~26.09.01			
			전 ○ ○		서강대학교 강사										24.12.24~26.12.23			
			정 ○ ○		조선이공대학교 교수										24.12.24~26.12.23			
			조 ○ ○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아트디렉터										25.08.18~27.08.17			
			최 ○ ○		월간<여행스케치> 객원기자										25.08.18~27.08.17			
			고 ○ ○		(사)재미있는 재단 이사장										26.06.05~28.06.04			
			길 ○ ○		(사)경기향제줄풍류보존회 이사장										26.06.05~28.06.04			
			김 ○ ○		(사)K뷰티전문가협회 경기도회 회장										26.06.05~28.06.04			
			이 ○ ○		(주)지역문화관광연구소 대표										26.06.05~28.06.04			
노동이사		유 ○ ○		경기문화재단 노동이사										26.03.09~28.03.08				
당연직감사		최 ○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26.01.19~재임시				
비상임감사		천 ○ ○		변호사천경득법률사무소소장										25.02.04~27.02.03				
주요기능	· 역사· 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문화예술의 창작·교육보급지원과 환경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방향토사 연구 · 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자본금(백만원) (’25.12.31기준)	설립		33,423					납입		88,586								
	수권		-					증자상황		△2,000								
재무상태(백만원) (’25.12.31기준)	자산						부채						자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171,558	74,028	97,530		40,598	26,262	14,336		130,960	120,009	10,951							

2027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 출연대상

- 대 표 :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 류인권)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9. 3. 9.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소 재 지 : (주사무소)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관고동)
(분사무소) 1.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7
2. 여주시 신륵사길 7(천송동)
 - 조 직 : 3본부 12팀 2TF팀
- 주요사업
 -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 사업, 도예인 육성지원 및 연구 사업
 - 경기도 도자문화시설 및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사업
 - 경기도자비엔날레 등 국제 도자문화예술 교류 사업
 -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도자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2.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9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도자재단 운영
- 예 산 액 : 11,731백만원
 - 인력운영비 : 6,910백만원
 - 경 상 경 비 : 1,811백만원
 - 사 업 비 : 3,010백만원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주요내용

- 경기도 도자 및 공예문화 산업 진흥·육성
- 경기도자미술관(이천), 생활도자미술관(여주), 도자박물관(광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여주)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道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2028 경기도자비엔날레 개최 준비

4. 필요성

- 국내판로개척 및 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 전시, 교육, 국제교류 등 도자·공예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를 통한 창작, 창업 지원으로 공예문화산업 육성
- 도자박물관·미술관 등 道 문화시설, 공유재산의 위탁 관리 운영

5. 기대효과

- 박물관·미술관 등 道 문화시설 운영, 도자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도예인 지원, 도자산업활성화, 공예창작지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경기도 도자·공예문화산업 진흥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경기도의 우수한 도자·공예문화 확산 및 도자·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장	최흥락(☎8008-2270)	문화복지팀장	윤미란(☎8008-4786)
------	--------	-----------------	--------	-----------------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A)	2026년 예산(B)	증감액 (A-B)
	총 계	11,731,200	14,738,200	△3,007,000
기관 운영비	소 계	8,721,200	8,721,200	-
	인건비	6,910,000	6,910,000	-
	경상경비	1,811,200	1,811,200	-
	시설비 및 부대비	-	-	-
사업비	소 계	3,010,000	6,017,000	△3,007,000
	도자산업성장기반 구축	980,000	-	980,000
	도자문화활성화기반 강화	600,000	530,000	70,000
	공예창작지원활성화	500,000	497,000	3,000
	문화시설 운영관리	780,000	1,190,000	△410,000
	2028 비엔날레 개최 준비	150,000	3,800,000	△3,650,000

한 국 도 자 재 단

소재지	(17379)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설립근거	• 법령: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조례: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대표전화	일반 : 031-631-6501						설립주체	경기도			
								FAX : 031-631-6648										
								URL : www.kocef.org										
연혁	• 1999.03.09. 재단(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조직위원회) 설립 • 2001.08.10.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제1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01.8.10. ~ 10.28.) • 2008.03.07. 명칭변경(도자진흥재단) • 2009.12.17. 명칭변경(한국도자재단) • 2013.05.10.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개장(경기도자박물관) • 2019.11.08.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개관 • 2022.01.13. 곤지암도자공원 공예의 언덕 ‘공방거리’ 조성 • 2024.09.06. 제12회 경기도자비엔날레 개최('24.09.06. ~ 10.20.)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6. 7. 1. 기준)	구분	계	임원	직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수석	책임	선임	주임	사원	가능직	소계	청경	무기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115	2	63	3	12	21	17	8	2	50	-	50	-	28
현원	115	2	63	3	11	22	14	11	2	50	-	50	-					
임원 (‘26. 7. 1.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법령상 임기					
	이사장		-		공석								-					
	대표이사(선임직)		류○○		□ 前)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25.11.24.~’27.11.23.					
	상임이사(선임직)		박○○		□ 前)경기주택도시공사 비상임이사								‘25.9.22.~’27.9.21.					
	이사(당연직)		박○○		□ 現)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5.1.1.~재임기간					
	이사(선임직)		김○○		□ 現)경기도 지속가능위원회 위원								‘25.9.22.~’27.9.21.					
			신○○		□ 現)이천도자공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5.9.22.~’27.9.21.					
			윤○○		□ 前)서진여자고등학교 교장								‘25.9.22.~’27.9.21.					
			이○○		□ 前)KOTRA 본부장								‘25.9.22.~’27.9.21.					
			정○○		□ 現)서경대 미래융합대학 부교수								‘25.9.22.~’27.9.21.					
			피○○		□ 現)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25.9.22.~’27.9.21.					
	노동이사(선임직)		김○○		□ 現)재단 문화본부 시설관리팀								‘25.9.10.~’27.9.9.					
	감사(당연직)		최○○		□ 現)경기도 문화정책과장								‘26.1.19.~재임기간					
감사(선임직)		소○○		□ 現)대진대학교 부총장								‘26.2.12.~’28.2.11.						
주요기능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 사업, 도예인 육성 지원, 도자문화 시설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 사업 등																	
자본금(백만원) (‘26. 8. 11.기준)	설립		100						납입		29,278							
	수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025 결산 기준)	자산				부채				자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37,848	33,308	4,540		1,495	1,349	146		36,353	43,042	(6,689)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 탁용석)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1. 8. 29.
 - 설립근거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소재지 :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 조직 : 2실, 4본부, 4센터, 12팀
- 주요사업 :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영상, 음악, 만화, 애니 등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 사업
 - 콘텐츠 인재양성 및 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 콘텐츠 기업 대상 특례보증 및 펀드조성 등 정책금융 지원 사업
 - 지역밀착 콘텐츠산업 육성 및 4대 지역거점 기반 기업 지원 사업
 - 콘텐츠산업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단 경영지원 사업

2.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3. 사업개요

- 사업명 :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 예산액 : 17,628백만원
 - 인력운영비 : 7,273백만원
 - 경상경비 : 1,472백만원
 - 사업비 : 8,883백만원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주요내용

- 영상, 음악, 만화, 애니 등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
- 콘텐츠기업 해외 진출지원, 콘텐츠 인력 육성
- 지역밀착 콘텐츠산업 육성 위한 4대 권역별 성장 지원
- 콘텐츠산업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인건비 등)
- 콘텐츠 기업 대상 특례보증 및 펀드 조성

4. 필요성

- 지역기반 콘텐츠 생태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문화콘텐츠 기반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융합콘텐츠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경기도 신성장 종합 육성
-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5. 기대효과

- 장르별 지원사업을 통한 도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정책금융운영 등 금융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기도 독립영화 제작지원, AI 콘텐츠 허브 운영 등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콘텐츠산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산업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주관부서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8008-4610)	콘텐츠정책팀장	이 현(☎8008-4680)
------	---------	-----------------	---------	-----------------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역	2027년 예산(안)(가)	2026년 본예산(나)	증감액 (가-나)
	총 계	17,627,527	21,310,400	△3,682,873
운영비	소 계	8,744,527	8,504,400	240,127
	인건비	7,272,907	6,869,267	403,640
	경상경비	1,471,620	1,635,133	△163,513
	시설비 및 부대비	-	-	0
사업비	소 계	8,883,000	12,806,000	△3,923,000
	콘텐츠 산업기반 지원	1,834,000	2,515,000	△681,000
	콘텐츠 인재양성	1,303,000	2,560,000	△1,257,000
	콘텐츠 정책금융 지원	1,021,000	1,295,000	△274,000
	지역거점 기반 기업지원	3,905,000	5,011,000	△1,106,000
	재단 경영지원	820,000	1,425,000	△605,000

경 기 콘 텐 츠 진 흥 원

소재지	경기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II 202동 9층(춘의동)																			
설립근거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대표전화		일반 : 032-623-8000						설립 주체		경기도, 부천시				
								FAX : 032-623-8088												
								URL : www.gcon.or.kr												
연혁	- 2001. 03 :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지원 조례 공포 - 2001. 08 :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재단법인 설립 - 2011. 11 : 경기콘텐츠진흥원(GCA) 現 기관명 개칭 - 2014. 05 :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 2015. 06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 2018. 07 : 서부 창작터 개소 - 2022. 12 :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6. 7. 1. 기준)	구 분	계	임 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 계	행 정	기 술	전 문 계	별 정	기 능	기 타 (시설)	소 계	청 경	무기 계약	기 타	소 계	기 간 제	단 시 간	기 타		
				정원	130	1	101	101					28		28	-	17	17	-	
				현원	126	1	99	99					26		26	-				
임원 (26. 7. 1.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인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법령상 임기				
	이사장(비상임)		최OO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2023.05~2027.05				
	부이사장(비상임)		박OO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재임기간				
	이사(비상임)		유OO		부천시 문화체육국장											재임기간				
	이사(상근)		탁OO		경기콘텐츠진흥원장											2023.07.~2027.07				
	비상임이사	김OO		(주)세오로보틱스 대표											2026.01.~2028.01.					
		박OO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26.01.~2028.01.					
		박OO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이사장											2026.01.~2028.01.					
		유OO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2026.01.~2028.01.					
		이OO		LG 경영연구원 자문											2026.01.~2028.01.					
		이OO		명지대학교 교수											2026.01.~2028.01.					
		이OO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원장											2024.01.~2028.01.					
		정OO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명예교수											2024.01.~2028.01.					
	조OO		무등일보 주필											2025.08.~2028.01.						
	노동이사		이OO		경기콘텐츠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책임매니저											2025.12~2027.12.				
비상임감사	강OO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											재임기간						
	이OO		법무법인 JR 변호사											2026.01.~2028.01.						
	김OO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2024.02.~2028.02.						
주요기능	-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 - 문화산업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사업 - 기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자본금(백만원) (25.12.31기준)	설립		17,170						납입		620									
	수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5.12.31기준)	자산				부채				자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36,116	9,487	26,629		3,283	2,053		1,230		32,833	17,790	15,043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2027년도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아트센터(사장 : 김상희)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4. 6. 1.
 - 설립근거 :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호원로307번길 20
 - 조직 : 3실 4본부 9팀 4예술단
- 주요사업
 -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 운영, 도립예술단 운영
 -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문화예술진흥 및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2.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운영재원 등)

3. 사업개요

- 사업명 : 경기아트센터 운영
- 예산액 : 44,793백만원
 - 운영비(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 34,207백만원
 - 사업비 : 10,586백만원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주요내용

-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 운영
- 도 예술단 운영(극단, 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예술진흥 및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등

4. 필요성

- 새로운 예술 창작 및 기획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 공연예술, 전시, 행사를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 4개 도 예술단 운영을 통한 각종 문화예술 공연 추진
 - 예술단 대표작품 개발 및 보급으로 도 문화예술 부흥 기여
- 국내외 문화교류로 도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역할 충실

5. 기대효과

- 공연예술, 전시 등 핵심사업 추진으로 도 문화예술 부흥 기여
-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예술교육 사업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기아트센터는 공연예술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도 문화예술 진흥에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필요

주관부서	예술정책과장	곽선미(☎8008-3620)	예술정책팀장	권오성(☎8008-4737)
------	--------	-----------------	--------	-----------------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2027년 예산(안)(A)	2026년 예산(B)	증감액 (A-B)
총계		44,792,800	55,076,400	△10,283,600
운영비	소 계	34,206,800	35,429,880	△1,223,080
	인건비	23,592,000	23,000,000	592,000
	경상경비	9,114,800	10,230,680	△1,115,880
	시설비 및 부대비	1,500,000	2,199,200	△699,200
사업비	소 계	10,586,000	19,646,520	△9,060,520
	통합홍보사업	720,000	1,528,000	△808,000
	문화예술교육사업	340,000	420,000	△80,000
	문화예술복지사업	810,000	1,150,000	△340,000
	예술단공연사업	2,246,000	2,760,000	△514,000
	예술단통합 문화예술사업	1,950,000	3,300,000	△1,350,000
	본부기획사업	2,500,000	6,096,520	△3,596,520
	본부프로젝트사업	880,000	1,592,000	△712,000
	G아트사업	900,000	2,400,000	△1,500,000
	국악원 공연사업	240,000	400,000	△160,000

경 기 아 트 센 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지방출자출연법,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대표전화		일반 : 031-230-3200					설립주체	경기도			
									FAX : 031-230-3239									
									URL : www.ggac.or.kr									
연혁	○ 1991. 6.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개관 ○ 2004. 4. 재단법인 설립등기 ○ 2004. 6.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출범 ○ 2004. 7. 경기도국악당 개관 ○ 2009. 11. 경기도립예술단 경기도문화의전당(법인) 소속화 ○ 2020. 3.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기관명칭 변경)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6. 7. 1. 기준)	구분	계	임원	직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예술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455	1	454	80	30	286				58		58		15
현원	410	1	354	80	29	245				55		55						
임원 (26. 7. 1.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인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법령상 임기					
	이사장		오○○		(前)경기도의회 의원								2026.01.22.~2028.01.21.					
	사장		김○○		경기아트센터 사장								2025.03.14.~2027.03.13.					
	당연직이사	박○○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5.02.03.~현 직 위 내						
		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2025.02.24.~2027.02.23.						
	선임직이사	강○○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2025.03.07.~2027.03.06.						
		김○○		(前)Arte TV 대표이사								2025.03.07.~2027.03.06.						
		마○○		(주)퓨전코리아 기획이사								2025.03.07.~2027.03.06.						
		박○○		부산마루국제음악회 위원								2025.03.07.~2027.03.06.						
		박○○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감사								2025.03.07.~2027.03.06.						
		손○○		한맥 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2025.03.07.~2027.03.06.						
		이○○		(前)경기민예총 이사장								2025.03.07.~2027.03.06.						
		정○○		(주)문화아이콘 대표								2025.03.07.~2027.03.06.						
		황○○		(주)원글로브 총괄 파트너								2025.03.07.~2027.03.06.						
		강○○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2025.10.25.~2027.10.24.						
		김○○		(前)대한민국 국회 정책전문위원								2025.10.25.~2027.10.24.						
		김○○		(前)여주시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2025.10.25.~2027.10.24.						
		문○○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2025.10.25.~2027.10.24.						
		이○○		GKL 비상임이사								2025.10.25.~2027.10.24.						
		이○○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문화도시센터장								2025.10.25.~2027.10.24.						
	노동이사	김○○		경기아트센터 문화나눔팀 수석부장								2025.12.16.~2027.12.15.						
	직무감사	곽○○		경기도 예술정책과장								2025.01.13.~현 직 위 내						
	회계감사	어○○		법무법인 바를정 변호사								2026.02.13.~2028.02.12						
주요기능	•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경기도예술단 운영 •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문화예술진흥 및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자본금(백만원) (25.12.31.기준)	설립		10						납입		-							
	수권		-						증지상황		해당 없음							
재무상태(백만원) (25.12.31.기준)	자산				부채				자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공공목적 사업준비금	계	자본금	잉여금등								
	15,418	9,035	6,383	9,491	4,076	5,123	292	5,927	10	5,917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운영재원 등) 아트센터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아트센터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도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